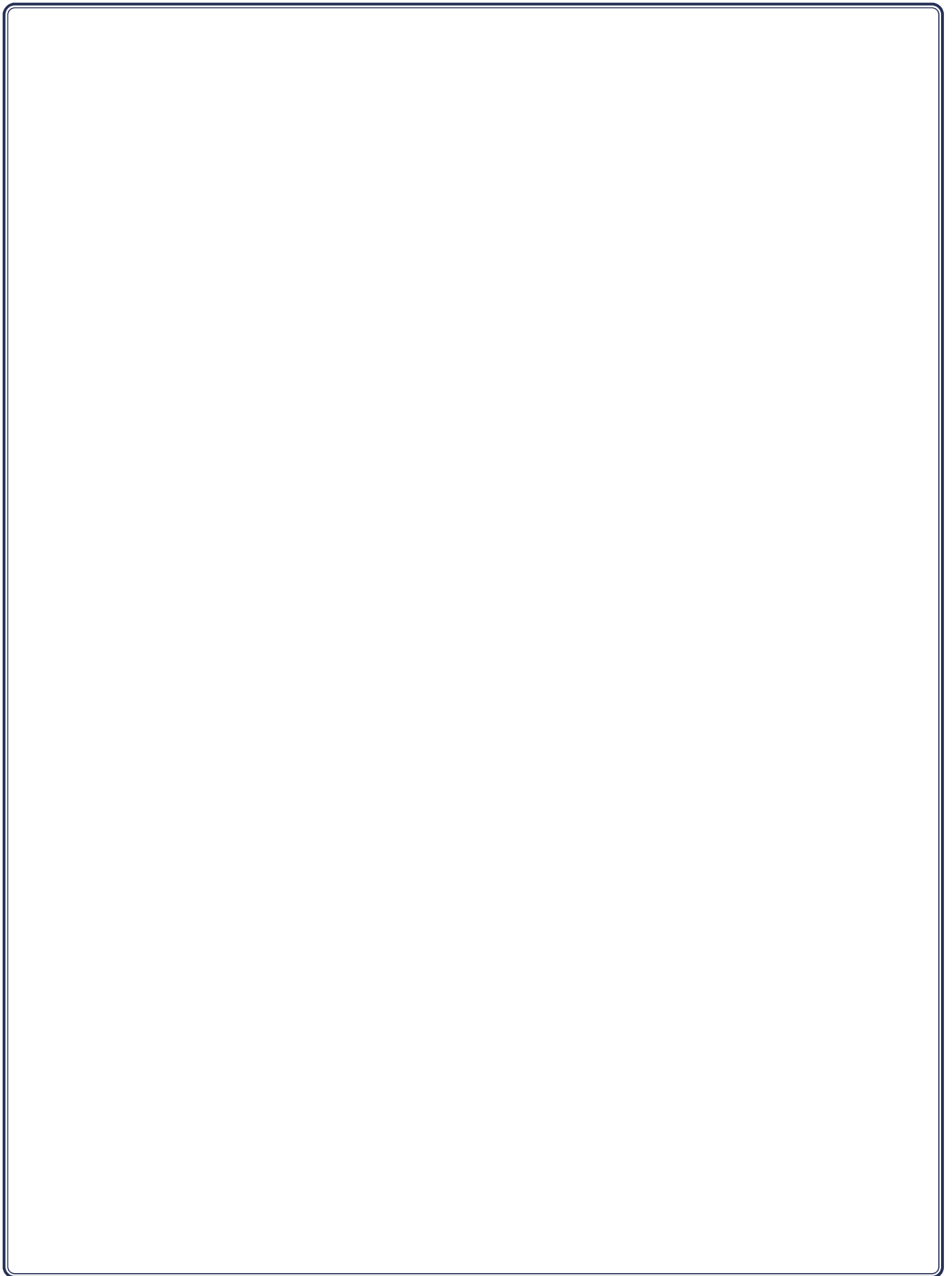


2026. 8.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관련 서식 개선

6

6.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정비

9

7. 법률과 용어통일(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사람' 변경)

12

Ⅲ. 추진 일정[안]

13

I . 개정 배경

□ 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 하나의 신청을 위해 복수의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특허 서식 제출절차로 인해, 출원·대리인 번거로움 유발

☞ 서식 제출절차를 통합·간소화하여 출원·대리인 편의제고 필요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요건이 복잡함에 따

라, 출원·대리인이 연장등록출원서 작성 시 반복적인 실수·오기재 발생

☞ 연장등록출원서 기재요령을 통해, 출원·대리인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내필요

□ 법령본문·서식의 미비점 정비를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 他 법령·행정규칙 및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취지와 상충하는 내용이 시행규칙 본문·서식에 존재

* 법제처에서 정리한 법령을 입안할 때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준

☞ 他 법령·행정규칙과 상충하는 시행규칙 본문·서식 정비필요

- 특허권 회복 요건 변경 및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요건 변경* 등 시행규칙 본문·서식에 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존재

* 허가 등을 받은날 부터 14년을 초과한 연장불가 등('25.7 개정)

☞ 시행규칙 본문·별지서식 등에 法 개정사항 반영필요

- 시행규칙(하위법령)에 기재된 용어가 특허법(상위법)과 상이하며, 용어취지상으로도 부적절한 부분 존재

☞ 특허법에 기재된 용어와 정합토록, 시행규칙 용어정비 필요

Ⅱ. 개정 사항

1

특허고객번호부여 · 포괄위임장 제출절차 간소화

(「특칙」 제5조의2 등, 서울사무소 민원)

□ 현황 및 개정이유

- (제도현황) 대리인이 처음 출원하는 출원인의 포괄적 대리를 원하

는 경우, ❶출원인 특허고객번호부여 및 ❷포괄위임등록 신청필요

- (개정이유) 대리인이 출원인 특허고객번호부여와 포괄위임의 동시 신청을 원해도 시차를 두고 별도신청*토록 하고 있어, 번거로움 유발

* [現 절차]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에 개별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부여(지재처) →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제출(대리인)

□ 개정 내용

-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하나로, 특허고객번호부여와 포괄위임등록을 동시에 신청 가능토록 개선

< 「특칙」 제5조의2 >

현 행	개정안
제5조의2(포괄위임) ① ~ ④ (생략) ⑤ (신설)	제5조의2(포괄위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도 같이 하려는 자는 <u>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 본문에 따른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u>

※ 이 외, 별지서식 등도 동일 취지로 변경 참고1

□ 개정 효과

- 불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리인 편의제고

2

공지예외주장 제출서식 간소화

(「특칙」 제20조의3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中 민간 제안과제)

□ 현황 및 개정이유

- (제도현황) 출원 후 공지에외주장 시 ❶보정서(별지 제9호서식) 및 ❷증명서류가 첨부된 서류제출서(별지 제13호서식) 2가지 서식제출 필요*

* 보정서는 공지에외주장 신청용, 서류제출서는 공지에외주장 증명서류 제출용

- (개정이유) 보정서와 동시에 증명서류 제출이 가능함에도 2개 서식(보정서·서류제출서)을 별도 제출토록 하여, 출원인 번거로움 유발

□ 개정 내용

- 특허출원 후 공지에외주장과 동시에 증명서류 제출 시, 보정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가능토록 개선(서류제출서 별도제출 불요)

< 「특칙」 제20조의3 >

현 행	개정안
제20조의3(공지에외적용의 보완) ① (생략)	제20조의3(공지에외적용의 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중략)...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제1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도 같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서류제출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 이 외, 별지서식도 동일 취지로 변경 참고2

□ 개정 효과

- 중복적인 서류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 편의 제고

3

첨부가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 본문에 규정

(「특칙」 제52조 등)

□ 현황 및 개정이유

- **(제도현황)** 별지 제30호서식(허가등 연장등록 출원서) 등은 첨부 필요 서류를 별지 서식 기재요령에만 규정(시행규칙 본문에는 규정 X)
- **(개정이유)** 법령입안 심사기준(법제처)상으로, 별지 서식에 첨부가 필요한 서류는 법령 본문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6), 99p>

- 신청서의 주요 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은 법령의 본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서식을 보고서야 신청서의 주요 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을 알게 되는 사례는 없도록 한다.

□ 개정 내용

- 별지 서식의 기재요령에만 규정된 첨부서류 등을 법령 본문에 규정

< 「특칙」 제52조 >

현 행	개정안
제5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중략)...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중략)...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u>허가등을 받은 경위서 1통</u>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허가 등을 받을 받은 경위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별지서식에만

규정

- 이 외, 별시 서식에만 기재된 他 첨부서류도 법령 본문에 규정^{참고3}

□ 개정 효과

- 법령입안·심사기준 등에 부합하는 특허법령 구축

4

특허법 개정사항 반영(특허권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 → 비고의로 완화)
(「특칙」 제55조의2)

□ 현황 및 개정이유

- (제도현황) 法 개정(法 제81조의3)에 따라, 기한 내 특허료 미납부 시 특허권 회복요건이 ‘정당한 사유’ → ‘고의가 아닌 경우’로 변경*

* 개인·중소기업 등의 경우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특허료 납부기한을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특허법 개정

- (개정이유) 특허법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에 관련내용 반영필요

□ 개정 내용

- 개정된 法에 맞춰 회복요건을 변경하고, 기간 내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한 후 서명·날인*토록 규정

* 해당서류로 고의성 여부에 대해 신속한 심사가능, 이후 고의가 아님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제재조치 시 고의성 입증근거로 작용가능

< 「특칙」 제55조의2 >

현 행	개정안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현행	개정안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① (생략)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① (현행과 같음)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고의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 1통

□ 개정 효과

- 실수로 특허료 납부기한을 놓쳐,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특허고객 보호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관련 서식 개선

(「특칙」 별지 제2호서식 등)

□ 현황 및 개정이유

- **(제도현황)** 출원인이 대상서류*를 기재하고, 지재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 시, 대상서류 제출불요

*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서류

- **(개정이유)** 별지서식 기재요령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원하는 서류만 기재토록 할 뿐, 동의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어, 개선필요

□ 개정 내용

- 별지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여부 파악절차 마련

< 「특칙」 별지 제2호서식 >

현 행	개정안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 (신설) ※ 기재요령 (신설)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사항】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 ※ 기재요령 7. 【그 밖의 사항】란 가.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 ☐)를 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1] 【그 밖의 사항】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현 행

개정안

[예 2] 【그 밖의 사항】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7. 【첨부서류】란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그 밖의 사항】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8. 【첨부서류】란

현행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그 밖의 사항】 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호번호: 000-000000]

8. 작성 시 유의사항

※ 他 별지서식도 동일하게 개정

□ 개정 효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6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현행화

(「특칙」 별지 제30호서식)

□ 현황 및 개정이유

- (제도현황) 규제(의약품 등의 임상·허가)로 인해 특허권을 실시 못한 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보상하는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 운영
- (개정이유) 특허법 및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현행화 및

개정안

9. 작성 시 유의사항

출원인이 실수할 수 있는 기재요령 명확화 등 개선필요

- 공유자 전원을 연장등록출원인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대표 출원인만 기재하는 등 오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안내필요**
 - 약사법·농약관리법 등 인용하는 법률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要**
 -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한 연장신청은 불가하다는 특허법 개정(法 제89조, '25 개정)에 맞춰, 기재요령을 통한 **명확한 안내필요**
 - **증명서류 범위가 한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문구 수정필요***
- * 의약품의 경우, (既) 임상시험 승인서 → (改) 임상시험 승인 관련자료(既 승인서 포함)

□ 개정 내용

- 연장신청서 기재요령 內 ‘연장등록출원인’란에 특허권자를 적어야 하며, 특허가 공유인경우 공유자 전원을 적어야함을 명시(法 제90조 제3항)

< 「특칙」 별지 제30호서식(연장등록신청서) >

현 행	개정안
제30호 서식 뒤쪽 기재요령 1. 【출원인】란 가. ~ 다. (생략) (신설)	제30호 서식 뒤쪽 기재요령 1. 【출원인】란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출원인란에는 특허권자를 적어야 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출원인으로 적어야 합니다.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출원서도 동일취지로 변경^{참고4}

- 약사법·농약관리법 등 인용하는 법률 조문의 개정사항 반영

< 「특칙」 별지 제30호서식 >

현 행	개정안
-----	-----

현행

제30호 서식 (뒤쪽 기재요령)

5.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란

(1) (생략)

(2) 【허가등을 받은 일자】란에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일자(동물용 의약품은 이에 상응하는 날),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허가내용(등록내용)】에는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 또는 「농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록)내용을 적습니다. ...(중략)...

(3) 허가등을 받은 자가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또는 해당 특허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

【허가등을 받은 일자】 2007. 1. 1.

【허가내용(등록내용)】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이하 생략)

개정안

제30호 서식 (뒤쪽 기재요령)

5.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란

(1) (현행과 같음)

(2) 【허가등을 받은 일자】란에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31조 제2항, 제31조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일(동물용 의약품은 이에 상응하는 날),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일,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경우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일을 적습니다. 【허가내용(등록내용)】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받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허가등의 내용을 적고, 허가등을 받은 자가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중략)...

(3) 허가등을 받은 자가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또는 해당 특허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

【허가등을 받은 일자】 2007. 1. 1.

【허가내용(등록내용)】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이하 생략)

○ 연장기간 상한(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 안내강화(기재요령)

< 「특칙」 별지 제30호서식 >

현 행	개정안
제30호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0호 서식 (뒤쪽 기재요령)
6. 【연장등록 신청기간】란 「특허법」...(중략)... 적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u>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5년의 일수만 적습니다.</u>	6. 【연장등록 신청기간】란 「특허법」...(중략)... 적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u>5년에 해당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5년에 해당하는 일수를 기재하여야 하고,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년까지 해당하는 일수를 적습니다.</u>

○ 허가등에 대한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 등 증명자료 문구수정

< 「특칙」 별지 제30호서식 >

현 행	개정안
제30호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0호 서식 (뒤쪽 기재요령)
7. 【연장이유】란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중략)...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할 증명자료는 의약품의 경우 <u>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서 사본, 의약품 품목허가증 사본, 외국 제3상 임상기간 증명자료, 농약의 경우 농약의 품목등록을 위한 시험신청 의뢰서 사본, 품목 등록증 사본, 농약원제의 경우 분석 및 시험의뢰서 사본, 농약원제등록증 사본 등입니다.</u>	7. 【연장이유】란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중략)... 첨부할 증명자료는 의약품의 경우 <u>임상시험 승인(신청) 관련 자료, 임상시험 종료보고서, 허가기관에서의 허가서류 검토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보완 요구서 및 보완자료 접수 증명자료 등 포함] 각 사본, 농약(원제)의 경우 시험(신청) 관련 자료,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약효나 약해 등의 시험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록기관에서의 등록 서류 검토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약(원제) 등록증, 보완 요구서 및 보완자료 접수 증명자료 등 포함] 각 사본 등입니다.</u>

□ 개정 효과

○ 연장신청서를 현행·명확화하여, 연장신청 관련 출원인 혼동방지

□ 현황 및 개정이유

- (제도현황) 法에서 특허요건 판단을 위해 정의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시행규칙에서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
- (개정이유) '자'에는 사람뿐 아닌 법인도 포함, 특허요건 판단주체에 법인이 해당되는 것은 부적절, 특허법처럼 '사람'으로 변경필요

□ 개정내용

- 시행규칙에 규정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사람'으로 변경

< 「특칙」 제21조 >

현 행	개정안
제21조(특허출원서 등)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u>자가</u>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u>사람이</u>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 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 등도 동일하게 변경 

☐ 개정 효과

- 법령에 맞도록 표현을 정비하여, 특허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Ⅲ. 추진 일정[안]

☐ 심사·출원시스템 개선 협의(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	'26. 8월~
☐ 처 내·외 의견조회 및 협의	:	'26. 8월~
☐ 관계부처 협의, 사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	'26. 9~10월
☐ 규제심사	:	'26. 9~10월
☐ 법제처 심사	:	'26. 11~12월
☐ 공포	:	'26. 1월
☐ 시행	:	'26. 1월

참고 1 특허고객번호부여·포괄위임장 제출절차 간소화 관련 개정안

□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현 행	개정안
제5조의2(포괄위임)	제5조의2(포괄위임)
⑤ (신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도 같이 하려는 자는 <u>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 본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u>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

현행
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개정안
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현행
제4호 서식 특허고객부여신청서 (앞쪽)
【그 밖의 사항】...(생략)...
(신설)
제4호 서식 특허고객부여신청서 (뒤쪽)
1.~ 2. (생략)
3. 【대리인】란
가. ~ 라. (생략)
마. (신설)
4. 【그 밖의 사항】란
가. ~ 나. (생략)

⇒

개정안
제4호 서식 특허고객부여신청서 (앞쪽)
【그 밖의 사항】...(현행과 같음)...
□ 포괄위임등록 신청
제4호 서식 특허고객부여신청서 (뒤쪽)
1.~ 2. (현행과 같음)
3. 【대리인】란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신규로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포괄위임등록 신청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등록대상 대리인】 , 【성명(명칭)] , 【대리인번호】 및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4. 【그 밖의 사항】란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행

다. (신설)

개정안

다. 신규로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 포괄위임등록 신청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은 상기 조문·서식을 준용하고 있어, 개정 불필요

참고 2 공지에외주장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 개정안

□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현행

제20조의3(공지에외적용의 보완)

① (생략)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개정안

제20조의3(공지에외적용의 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중략)...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도 같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현행

제9호 서식 명세서 뒤쪽 기재요령

개정안

제15호 서식 명세서 뒤쪽 기재요령

현 행
1 ~ 11 (생략)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 등 보정, 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충,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
•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개정안
1 ~ 2 (현행과 같음)
⇒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 등 보정, 출원서 등 보완, 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충,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
• 보정(보충)내용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은 상기 조문·서식을 준용하고 있어, 개정 불필요

참고 3 첨부가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 본문에 규정 관련 개정안

□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현 행
제9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9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1통
가. 국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통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통(다만, 외국 자연인 중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현 행

③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서명·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통을 제출해야 한다)

다. 국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다만,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 1통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라.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통(다만, 외국 법인 중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또는 고유번호증)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마. 국가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 1통

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

③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서명·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경우: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제출인 구분에 따른 다음 항목의 서류 1통

2. 국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성명을 개명한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통

현 행

개정안

3.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통(다만, 외국인 중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통을 제출해야 한다)
4. 국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외국 법인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의 명칭·주소변경증명서,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선언서 또는 국내 영업소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중 1통
6. 국가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 1통
7.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통

□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현 행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⑤ (신설)

개정안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⑥ 제3항에 따라 소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24호 서식의 소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현 행

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

개정안

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

현 행
산처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u>참고자료 1통</u>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개정안
산처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에 대한 정보의 경우 간행물 등의 증거서류 1통
2. 참고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특허법 시행규칙 제52조

현 행
제5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개정안
제5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u>허가등을 받은 경위서 1통</u>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현 행
제54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54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개정안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u>설정등록을 받은 경위서 1통</u>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특허법 시행규칙 제81조

현 행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개정안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u>변경 후의 출원인이 신고하는 경우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u>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특허법 시행규칙 제83조

현 행
제83조(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83조(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 <u>에</u> <u>보정을 위한 대체용지를 첨부하여</u> 지식

현행

개정안

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

현행

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개정안

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진술서 또는 보정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현행

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

개정안

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

현행	개정안
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u>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u> 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u>2. 설정등록을 받은 경위서 1통</u> <u>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u> 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참고 4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출원서 개정(p.9 관련)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서)

현 행	개정안
제30호의2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0호의2 서식 뒤쪽 기재요령
1. 【출원인】란	1. 【출원인】란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 라. 출원인란에는 특허권자를 적어야 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출원인으로 적어야 합니다.

참고 5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서 **사람**으로 변경 관련 개정안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현 행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 (생 략)
1 ~ 6 (생략)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현 행
제15호 서식 명세서 뒤쪽 기재요령
1 ~ 2 (생략)
가. 발명(고안)의 설명 기재 방법
발명(고안)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중략)...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중략)...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 적기 바랍니다
(1) ~ (6) (생략)
(7)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란에는 ...(중략)...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고안)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중략)...
통일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제15호 서식 명세서 뒤쪽 기재요령
1 ~ 2 (현행과 같음)
가. 발명(고안)의 설명 기재 방법
발명(고안)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중략)...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중략)...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 적기 바랍니다.
(1) ~ (6) (현행과 같음)
(7)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란에는 ...(중략)...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고안)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중략)...
통일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

현 행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1 ~ 6 (생략)
7. 그 밖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개정안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현 행

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